

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가. 금융투자업규정
나.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
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(2017/2/23개정·시행¹⁾)

1) 목적

- ☐ 「외국인 투자등록제도 개선 방안」(‘16.2월)에 따라 도입되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「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」(‘16.11월)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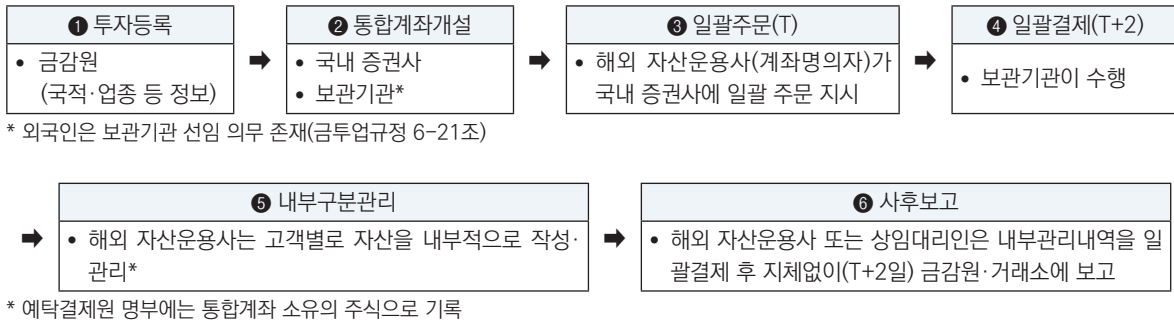
2) 주요 내용

- ☐ 외국인 통합계좌의 운용방식 규정(6-7조 7항)
- 외국 자산운용사·증권사가 자기 명의로 일괄 주문·결제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
 - 단, 통합계좌 내 포함될 수 있는 외국인들은 금감원에 투자등록한 외국인에 한함
- ☐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내역 보고의무 규정(6-7조 8항)
- 통합계좌 명의자는 주식결제 후 지체없이(T+2일) 투자자별 내부관리내역을 금감원·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함
- ☐ 외국인 통합계좌 내 외국인 정보 관리(6-12조 4항)
- 통합계좌 명의자가 투자등록을 할 때 최종 투자자 목록 및 투자등록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, 통합계좌 내 외국인 목록 변경 시에도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다만, 6-7조 7항 및 8항, 6-12조 1항 및 4항, 6-13조 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하며, 4-115조 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제공받은 자료에도 적용

외국인 통합계좌 이용절차



□ 통합계좌 명의자의 허위 투자등록 방지(6-13조 3항)

- 통합계좌 명의자가 투자등록 시 허위정보 기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금감원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

□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결산보고서 등 집중계재 근거 마련(4-115조 2항)

-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결산보고서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에도 게재하도록 함

나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2017/2/23개정·시행²⁾³⁾)

1) 목적

-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의 참여를 위하여 발표('16.11.7)된 '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'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제완화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
 -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 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

2) 다만, 2-2조의6 4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2-2조 1항 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적용

3) 이 규정의 시행으로 2-2조의4 5항에 따라 새로 게재 조치를 하여야 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이 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게재 조치를 하여야 함



-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경감하고, 기업공시 실무상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의 조문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후속투자 지원 강화(2-2조 2항 9호 신설)
 - 원활한 후속자금 조달을 위해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후속 자금 유치(사모)시에는 보호예수 적용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
- 중개업자 등록 취소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후속 조치사항 마련(2-2조의4 5항 신설)
 - 중개업자가 중도해산·철퇴되더라도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성공 기업이 투자자에게 중단 없이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근거 마련
- 크라우드펀딩 ‘전문투자자 등’ 범위 확대(2-2조의6 1항 개정)
 -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‘전문투자자 등’으로 인정되는 창업·벤처기업 투자 경험자 범위를 확대(투자 실적 요건을 완화)
-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(2-2조의6 3항 신설)
 -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한도를 높게 적용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범위에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전문인력(주요직무 종사자) 중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
- KSM 거래시 전매제한 예외 적용(2-2조의6 4항 신설)
 -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(KSM)을 통해 거래되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규제 적용을 배제
- 분·반기 보고서 공시항목 중 분반기 중 변동사항이 적어 투자판단에 미칠 효용이 낮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, 녹색기술인증산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의 기재 생략 허용(4-3조)



-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증권발행을 하는 경우, 국내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은 외국기업에 한하여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을 적용하고, 전매기준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는 환류금지조치 조건도 완화(2-2조의2)
 - 국내에 상장한 외국법인, 발행주식의 20%이상을 국내거주자가 보유한 외국법인
 - 거주자 취득금지 기재,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중개·주선 제외가 있을 경우 전매기준 예외로 인정(취득자 동의서 징구 등 면제)

- 일괄신고서를 제출 가능한 일반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채발행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시에 동 이사회 의사록을 재첨부할 수 있도록 정비(2-4조)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